

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

2023. 2. .

국 토 교 통 부  
(녹색도시과)

#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·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예고 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

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3-5-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3-5-3. 해제가능총량의 예외

(1)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을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.

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

②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 조성사업

③ 그 밖에 국가 경제·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·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(2)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입안권자에게 (1)에 따른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 예외수요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(3) 국토교통부장관은 (2)에 따라 제출된 예외수요의 국가정책 부합성,

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불가피성, 개발수요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,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절 -----  <u>3-5-3. 해제가능총량의 예외</u>  <u>(1)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</u>  <u>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</u>  <u>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</u>  <u>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을 해</u>  <u>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</u>  <u>수 있다. 다만, 수도권에서 시행</u>  <u>하는 사업은 제외한다.</u>  <u>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</u>  <u>법률」 제2조제8호가목의 국</u>  <u>가산업단지 조성사업</u>  <u>②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</u>  <u>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</u>  <u>제1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</u>  <u>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</u>  <u>류단지 조성사업</u>  <u>③ 그 밖에 국가 경제·안보에</u>  <u>미치는 영향 및 수출·고용</u>  <u>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사</u>  <u>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</u>  <u>인정하는 사업</u>  <u>(2)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</u>  <u>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과정</u></p>

에서 입안권자에게 (1)에 따른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 예외수요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(3) 국토교통부장관은 (2)에 따라 제출된 예외수요의 국가정책 부합성,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불가피성, 개발수요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,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.